

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4,240,791	16,027,224
일반회계	454,768,959	13,643,069
특별회계	79,471,832	2,384,155
공기업특별회계	25,750,183	772,50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466,588	523,99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283,595	248,508
기타특별회계	53,721,649	1,611,64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00,967	48,029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36,922	13,1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286,680	68,600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278,550	8,357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87,732	38,63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00,000	81,000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4,193,000	125,790
중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35,199,892	1,055,997
도시개발특별회계	2,700,000	81,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0,000	6,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29,656	6,890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2,608,250	78,24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04,24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